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이훈기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3729

발의연월일: 2024. 9. 6.

발 의 자:이훈기·김태년·김정호

김용만 · 김태선 · 한병도

이광희 • 맹성규 • 박희승

이병진 • 이정문 • 조인철

이재강 의원(13인)

제안이유

현행 「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」(이하 "정부광고법"이라 함)은 국가기관·지방자치단체, 공공기관, 지방공기업 및 특별법인 등이 국내외 홍보매체에 광고, 홍보, 계도 및 공고를 위한 일체의 유료고지 행위(이하 "정부광고"라 함)를 할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의뢰하여 집행하도록 하고, 시행령에서 한국언론진흥재단이 독점적으로 정부광고를 대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.

그런데 방송통신 분야의 뉴미디어가 증가하는 등 급변하는 다매체환경 속에서 광고 기획·전략·제작·매체집행 등 매체별로 높은 전문성이 요구되는 상황이며, 「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설립된 한국언론진흥재단이 매체력과 무관하게 일부 매체에 정부광고를 편중되게 집행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.

이러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방송통신매체의 광고전문기관으

로 설립된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를 정부광고 대행업무에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.

이에 정부광고법 및 현행법의 개정을 통하여 정부광고 대행을 인쇄 광고 분야와 방송광고 분야를 구분하여 방송광고 분야는 한국방송광 고진흥공사가 담당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.

주요내용

- 가. 법령에서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(이하 "공사"라 함)의 사업으로 정하거나 위탁한 사업 또는 국가 등이 위탁한 사업을 공사의 사업으로 추가하고, 이를 수행하기 위한 별도의 조직과 예산을 운영할 수있도록 함(안 제29조).
- 나. 공사의 재원에 공사의 사업으로 정하거나 위탁한 사업 또는 국가 등이 위탁한 사업으로 생긴 수익금을 포함하도록 함(안 제30조).
- 다. 지역 및 중소지상파방송사업자 지원을 위한 기금을 설치하고, 기금 재원으로 정부광고 대행수수료 등을 포함하는 규정을 신설함(안 제30조의2 신설).

참고사항

이 법률안은 이훈기의원이 대표발의한 「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」(의안번호 제3731호) 및

「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」(의안번호 제3732호)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 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.

법률 제 호

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29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(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)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, 같은 조 제6호를 제7호로 하고, 같은 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7호(종전의 제6호) 중 "제5호"를 "제6호"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5.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 공사의 사업으로 정하거나 공사에 위탁하는 사업
- 6. 그 밖에 국가,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이 공사의 사업으로 위탁하는 사업
- ② 공사는 제1항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별도의 조직과 예산을 운영할 수 있다.

제30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호 중 "제29조"를 각각 "제29조제1항" 으로 한다.

제3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30조의2(기금의 설치 등) ① 네트워크 지역지상파방송사업자 및 중소지상파방송사업자의 발전 및 지원을 위하여 지역중소지상파방송

발전기금(이하 이 조에서 "기금"이라 한다)을 설치한다.

-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. 이 경우 제5호의 재원에 대하여는 다른 재원과 구분하여 별도로 관리하여야 한다.
- 1. 정부의 출연금 및 융자금
- 2. 정부 이외의 자의 출연금 및 기부금
- 3.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
- 4. 기금운용에 따라 생기는 수익금
- 5. 「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」 제10조제2 항 및 제4항제3호에 따라 공사가 징수한 수수료 중 문화체육관광 부장관이 사용 승인한 수수료
- 6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
- ③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한다. 이 경우 제1호와 관련하여서는 전년도 재무상태표상의 결손금이 재무상태표상의 자 본금 총액 이상인 사업자를 우선하여 지원하여야 한다.
- 1. 네트워크 지역지상파방송사업자와 중소지상파방송사업자의 경영 여건 개선
- 2. 네트워크 지역지상파방송사업자와 중소지상파방송사업자의 제작 •유통구조 개선
- 3. 네트워크 지역지상파방송과 중소지상파방송을 위한 인력양성 및 교육·조사·연구
- 4. 네트워크 지역지상파방송 및 중소지상파방송의 활성화 및 기반조

성

- 5. 그 밖에 네트워크 지역지상파방송 및 중소지상파방송의 경쟁력 강화와 공익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사업
- ④ 기금은 방송통신위원회가 관리·운용하되,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의 관리·운용에 관한 업무를 공사에 위탁할 수 있 다.
- ⑤ 기금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관리·운용을 위하여 지역중소지상파 방송발전기금운용심의회(이하 "심의회"라 한다)를 둔다.
- ⑥ 심의회의 구성·운영 및 그 밖에 기금의 관리·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9조(사업) <u>공사는 다음 각 호</u>	제29조(사업) ①
의 사업을 한다.	
1. ~ 4. (생 략)	1. ~ 4. (현행과 같음)
5. 그 밖에 방송통신위원회가	5.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
방송광고산업 육성을 위하여	공사의 사업으로 정하거나 공
위탁하는 업무	사에 위탁하는 사업
<u><신 설></u>	6. 그 밖에 국가, 지방자치단체
	및 공공기관 등이 공사의 사
	업으로 위탁하는 사업
<u>6.</u> 제1호부터 <u>제5호</u> 까지의 사업	<u>7.</u> <u>제6호</u>
에 부대되는 사업	
<u><신 설></u>	② 공사는 제1항제5호 및 제6
	호에 따른 사업 수행과 관련하
	여 필요한 경우 별도의 조직과
	예산을 운영할 수 있다.
제30조(자금의 조달 및 회계) 공	제30조(자금의 조달 및 회계)
사는 <u>제29조</u> 에 따른 사업을 시	<u>제29조제1항</u>
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	
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달한	
다.	,
1. (생 략)	1. (현행과 같음)
2. <u>제29조</u> 의 사업으로 생긴 수	2. <u>제29조제1항</u>
익금	
3. ~ 6. (생 략)	3. ~ 6. (현행과 같음)

<신 설>

- 제30조의2(기금의 설치 등) ① 네 트워크 지역지상파방송사업자 및 중소지상파방송사업자의 발 전 및 지원을 위하여 지역중소 지상파방송발전기금(이하 이 조에서 "기금"이라 한다)을 설 치한다.
 -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 으로 조성한다. 이 경우 제5호 의 재원에 대하여는 다른 재원 과 구분하여 별도로 관리하여 야 한다.
 - 1. 정부의 출연금 및 융자금
 - 2. 정부 이외의 자의 출연금 및기부금
 - 3.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

 4. 기금운용에 따라 생기는 수
 - 5. 「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
 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」
 제10조제2항 및 제4항제3호에
 따라 공사가 징수한 수수료
 중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사용 승인한 수수료
 - 6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수입금

- ③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한다. 이 경우 제1호와 관련하여서는 전년도 재무상태표상의 결손금이 재무상태표상의 자본금 총액 이상인 사업자를 우선하여 지원하여야 한다.
- 1. 네트워크 지역지상파방송사 업자와 중소지상파방송사업자 의 경영여건 개선
- 2. 네트워크 지역지상파방송사 업자와 중소지상파방송사업자 의 제작·유통구조 개선
- 3. 네트워크 지역지상파방송과 중소지상파방송을 위한 인력 양성 및 교육·조사·연구
- 4. 네트워크 지역지상파방송 및

 중소지상파방송의 활성화 및

 기반조성
- 5. 그 밖에 네트워크 지역지상 파방송 및 중소지상파방송의 경쟁력 강화와 공익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서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사업
- ④ 기금은 방송통신위원회가 관리·운용하되, 대통령령으로

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의 관리

 · 운용에 관한 업무를 공사에

 위탁할 수 있다.

⑤ 기금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관리·운용을 위하여 지역중소 지상파방송발전기금운용심의회 (이하 "심의회"라 한다)를 둔 다.

⑥ 심의회의 구성·운영 및 그 밖에 기금의 관리·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